

2025년도 장애인육상 「지도자/심판」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

가. 등록개요

- 기 간 : 2026. 5. 31.(일) *신규등록자는 상시등록 가능.
- 대 상 자 : 지도자(자격증) / 심판(심판자격증)
- 등록 사이트 :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

나. 등록절차



- 매주 월요일 지도자·심판 등록 최종(중앙) 승인
- * 승인요일을 제외한 요일에는 승인 불가.

다. 주요내용

- 매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(전원)
- 지도자/심판 **등록은 반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 매뉴얼을 참고하여 등록**
- 시스템 미등록 시 학생체전, 전국체전 및 본 연맹 주최/주관의 대회 참가 불가
- **심판의 경우,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공인 심판원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1950년(포함) 출생 이전자 심판활동 제한으로 등록 불가**

라. 유의사항

- 지도자 자격증 첨부(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의거)
 - 가.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
 - 나.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
 - 다.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
- 심판 자격증 첨부
 - 가. 국제 심판자격증(장애인육상심판)
 - 나. 국내 심판자격증(장애인육상심판 1급,2급,3급)
- 당해 연도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자는 심판등록 및 활동을 제한
- 등록 절차(증비서류 미비 등)에 맞지 않을 경우, 미승인 처리 되며 미승인일 경우, 지도자/심판이 직접 통합포털 내 등록 신청 진행상태에서 수정 후 다시 신청해야 함.

마. 기타사항

- 통합포털 시스템(선수등록 시스템) 문의는 **070-5147-2427**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그 외 문의사항은 **02)455-4081** 또는 **kafdkorea@hanmail.net**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바. 지도자등록 규정(연맹)

제3장 지도자 등록 및 활동

제19조(지도자 등록 자격) 연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다. <개정 '24.8.22.>

1.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
 - 가. 1급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
 - 나. 2급 장애인스포츠택지도사
2. 삭제<삭제 '24.8.22.>
2.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<신설 '24.8.22.>

[제목개정 '24.8.22.]

제20조(지도자등록) 지도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연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도자등록을 한다.

제21조(지도자등록 제한 및 취소)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제2항1호에서5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. <개정 '20.2.19.>

② 등록절차를 마친 지도자는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22조(지도자등록 시기) ① 등록기간은 매년 5월 31일 이전까지 하여야 하며, 신규등록한 지도자와 신설팀 지도자는 예외로 한다. 등록 기간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차기 등록기간까지 지도자활동을 제한한다. <개정 '20.2.19.>

② 추가등록기간은 연맹이 결정하고,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. <개정 '24.8.22.>

③ 지도자는 등록 마감일(추가등록 마감일 포함)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자까지 유효하다. <개정 '24.8.22.>

④ 2년간 미등록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.

제23조(지도자등록 자격) 지도자등록은 각 연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
제24조(지도자등록비) 지도자로 등록하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25조(지도자등록 절차) ①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은 시·도장애인체육회의 지도·감독을 받아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지도자를 등록하여야 한다.<개정 '24.8.22.>

1.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자카드를 포함한 지도자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.
2. 시·도 연맹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1차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경유 란에 확인하여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. 다만,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이 결성되지 않거나 등록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·도장애인체육회의 2차 심사로 대체한다.
3. 시·도장애인체육회는 제출 받은 등록서류에 대해 제2차 심사 후 경유 란에 확인하여, 연맹에 최종 심사 요청을 해야 한다.
4. 연맹은 지도자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 심사 결과를 시·도장애인체육회에 통보하고, 필요에 따라 전국연맹체에 통보한다.

② 연맹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도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<개정 '24.8.22.>

③ 등록 지도자의 기본정보, 경기실적, 상벌사항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, 자료공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<개정 '24.8.22.>

④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'한국도핑방지규정' 준수 서약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'24.8.22.>

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지도자는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'20.2.19, '24.8.22.>

제26조(지도자 등록지) 지도자 등록은 개인 또는 단체(팀)가 소속되어 있는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시·도장애인육상연맹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직접 등록한다. <개정 '20.2.19, '24.8.22.>

제27조(지도자활동의 자격) 연맹의 지도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장애인육상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.<개정 '24.8.22.>

바. 지도자등록 규정(체육회)

부 칙(2021. 12. 15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19조 제2호의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며, 2023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.

사. 심판등록 규정

제4장 심판 등록 및 활동

제28조(심판등록 구분) ① 연맹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, 국제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.

1. 국제심판
2. 국내심판
- 가. 1급
- 나. 2급
- 다. 3급

② 연맹에서 양성한 심판이라 하더라도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급체계가 아닌 단일 등급인 경우에는 연맹의 심판양성지침 등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국내심판 3급으로 본다. <개정 '24.8.22.>

제29조(심판등록) 심판으로 활동하려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연맹에 직접 심판등록을 한다. <개정 '24.8.22.>

제30조(심판등록 제한 및 취소) ① 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1호에서 5호에 해당되는 심판은 등록을 할 수 없다. <개정 '20.2.19.>

②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은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이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.

제31조(심판등록 시기) ① 등록기간은 매년 5월 31일 이전으로 하며, 신규 등록한 심판은 예외로 한다. 단서조항(다만, 추가등록기간이 규정에 없는 한) 등록 기간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차기 등록기간까지 심판활동을 제한한다. <개정 '24.8.22.>

② 추가등록기간은 연맹이 결정하고,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한다. <개정 '20.02.19, '24.8.22.>

③ 심판은 등록 마감일(추가등록 마감일 포함)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자까지 유효하다. <개정 '24.8.22.>

④ 2년 이상 미등록된 자가 새로이 등록할 경우 신규 등록자로 간주하며 등록기간의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.

제32조(심판등록 자격) 심판등록은 연맹의 정해진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 <개정 '24.8.22.>

제33조(심판등록비) 심판으로 등록하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34조(심판등록 절차) ① 연맹은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에 따라 심판을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'24.8.22.>

1. 심판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심판카드를 포함한 심판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.
2. 연맹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등록신청자에 대하여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한다.
3. 연맹은 심판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15일 이내에 그 최종 심사결과를 연맹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② 연맹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심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'24.0.0.>

③ 등록 심판의 기본정보, 경기실적, 상벌사항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등록하고, 자료공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 <개정 '24.8.22.>

④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심판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 <신설 '20.2.19, '24.8.22.>

제35조(심판활동의 자격) 연맹의 심판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장애인육상의 심판으로서 심판활동을 할 수 있다. <개정 '24.8.22.>

제36조(심판활동의 제한) 당해 연도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자는 심판등록 및 활동을 제한한다.